

# 업무협력협약서

대구대학교 - 경상북도 경산시

대구대학교와 경상북도 경산시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교육부 『지방대학 특성화 사업』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양 기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신의성실의 의무)

양 기관은 협약의 책임과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, 협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.

## 제2조(업무협약내용)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- (인력양성) 지역 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
- (산학연계) 산학 연계 프로그램 및 각종 산학교류
- (취업 및 창업) 청년 실업 해소와 관련한 프로그램
- (지역상생)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
- (기타)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인력·정보 교류 및 기자재 활용 등

## 제3조 (해석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제4조 (재정)

본 협약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 경산시는 재원 출연의무는 가지지 않는다(단, 추후 상호 협의로 변경할 수는 있다).

#### 제5조 (기간)

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일방이 중도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본 협약의 내용을 증빙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4월 22일

대구대학교



경상북도경산사장

